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2005. 4. 1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4월 6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4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111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5. 4. 1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 영 남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의 도입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2005. 6. 30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조직 보강과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
- 행정관리국에 두는과중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 감사담당관 분장사무중 재난관리 업무를 행정관리국의 분장사무로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 도입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애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재난관리기능을 통합운영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 안 제3조제2항에서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 중 재난관리업무를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제29호 및 제30호에 재난관리업무를 신설 규정하였음.

○ 행정관리국산하 소관과를 규정한 안 제4조제1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추가 신설하고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존속하도록 규정하였음.

○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는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는 2005년 7월 1일부터 여유기구로 존속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 동 건은 날로 확대되어 가는 각종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해 전담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기구가 설치되면 지역실정과 재난 수요 및 재난관리능력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난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비용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의 물건비로 2,407만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하는 것인가?
- 답변요지(김영남 총무과장) : 대통령령에 의하여 신설하는 것임.

○ 질의요지(오윤수 위원) :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에 팀장이 없는 이유는?

○ 답변요지(김영남 총무과장) : 무보직 팀장을 발령 낼 예정임.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주민자치과는 과거에 총무과 동정팀에서 분할된 것인가?

○ 답변요지(김영남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질의요지(남두희 위원) :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 답변요지(김영남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5. 4.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의 도입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2005. 6.30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조직보강과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 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
- 나. 행정관리국에 두는과중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 다. 감사담당관 분장사무중 재난관리 업무를 행정관리국의 분장사무로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2004.1.29 법률 제7128호) 제102조
-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2004.12.18대통령령 제18603호) 제6조의2 및 제10조제1항

나. 예산조치 : 예산팀과 협의 완료

다. 협 의

- (1) 여유기구제의 도입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행정자치부, 2004.12.18)
- (2) 지방공무원법제8조제1항5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완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 (1) 입법예고 (2005. 2.28 ~ 3.20) 결과, 특이한 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 (4) 기구신설 및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민원조사 및 재난관리업무”를 “민원조사업무”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민원봉사과 및 여권과를 둔다”를 “민원봉사과·여권과 및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다만, 주민자치과는 여유기구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6호 내지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1호 내지 제33호”를 “제6호 내지 제28호”로, “제34호”를 “제36호”로, “제29호 내지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9. 재난상황통합관리 및 총괄
30. 재난위험시설물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1.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2. 전시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3.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
34.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35. 민방위 비상급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중 여유기구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생략) ②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두고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감사·조사·민원조사 및 재난관리업무 등으로 한다.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민원조사업무-----
제4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주민자치과·문화체육과·민원봉사과 및 여권과를 둔다. ②(생략) 1. ~ 5.(생략) 6.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시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 9.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비상급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1. ~ 33.(생략)	제4조(행정관리국) ①----- ----- -----민원봉사과·여권과 및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다만, 주민자치과는 여유기구로 한다. ②(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6. ~ 28.(현행 제11호 ~ 제33호와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9. 재난상황통합관리 및 총괄
(신 설)	30. 재난위험시설물지역의 지정에 관한사항
(신 설)	31.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32.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 시행 및 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 한 사항
(신 설)	33. 민방위대 설치 · 조직편성 · 동 원에 관한 사항
(신 설)	34.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 한 사항
(신 설)	35. 민방위 비상급수에 관한 일반적 인 사항
34. 담당관 및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36. (현행 34호와 같음)

기구 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4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재난관리부서 1개과 신설
- 정원 9명 증원 [5급 1, 7급 4, 8급 6, 9급 2, 기능10급 △4]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393,775		
○ 인 건 비	333,984		
- 기본급	190,104	- 5급 27호 기준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 수 당	58,673	- 7급 17호 기준	
- 정액급식비	14,040	- 8급 12호 기준	
- 교통보조비	13,560	- 9급 8호 기준	
- 명절휴가비	17,878	- 기능10급 22호 기준	
- 가계지원비	29,797		
- 연가보상비	9,932		
- 기타직보수	-		
- 일용인부임	-		
○ 이전경비	35,716		
- 성과상여금	6,793		
- 연금부담금	21,893		
- 국민건강보험금	7,030		
- 연금지급금	-		
○ 물 건 비	24,075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구본청 1개과 신설 기준	기구신설에 따른 소요비용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5		
- 직책급여업무추진비	1,200		
- 직급보조비	14,34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00		